



전문대학원의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

전문개정일: 2025.04.30

제1조(목적)

이 내규는 본 대학원과 본교 전문대학원(이하 “전문대학원”) 간의 학점 인정 및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수강신청 자격 및 제한)

- ① 본 대학원 재학생(학업연장재수강자는 제외)은 관련학과 학생에 한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② 전문대학원의 교과목중 이수구분이 ‘연구선택’ 및 ‘연구필수’인 교과목은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.
- ③ 전문대학원의 수업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전문대학원 학생의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수강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.
- ④ 전문대학원의 수강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수강 신청내역의 추가, 삭제 및 변경이 제한되며, 신청한 교과목이 부득이한 사유로 폐강되더라도 타 교과목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.

제3조(이수학점 인정)

- ① 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최대 인정학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- 1. 석사학위과정: 학기당 3학점 (누적 최대 12학점)
 - 2. 박사학위과정: 학기당 6학점 (누적 최대 18학점)
 - 3.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: 학기당 3학점 (누적 최대 18학점)
- ② 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‘타전공(일반선택)’으로 인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이수구분을 ‘전공선택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 - 1.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일 경우
 - 2. 학과 주임교수가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한 경우
 - 가. 논문지도교수가 졸업논문 주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
 - 나. 학과 주임교수가 해당교과목이 소속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과 학문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
 - 3. 학점교류 해당학기 종료 직후,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을 통해 대학원교학팀으로 “대학원 과목구분 변경 신청서”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
제4조(수강신청 및 변경/취소)

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.

- 1. 전문대학원 수업담당교강사로부터 수강 가능 여부 확인
- 2. 소속 단과대학 및 학과에 방문하여 서면 수강신청 작성
- 3. 논문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
- 4. “전문대학원 수강신청서(명단)”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을 통해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
- 5. 대학원교학팀에서 수강신청 내역 별도 일괄 입력

제5조(준수사항 등)

- ① 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전문대학원의 학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기타 이 내규에서 명시되지 않은 학사업무 관련 사항은 학점교류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운용한다.

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전문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공포일: 2025.04.30.>